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1. 3. 17. 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희수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1년 2월 25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3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3월 9일

(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희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·운영중인
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, 일부조문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

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(안 제3조제2항)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~ 안 제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민병완)

- ‘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
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”를 “뜻은 다음과 같다.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농·어업”이라 함은”을 ““농어업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농·어업인”이라 함은”을 ““농어업인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, 제4호 중 “라 함은”을 각각 “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5호, 제6호, 제7호, 제8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(이하 “기금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(이하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 수산 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 발을 위한 충청북도 농어촌개 발기금특별회계(이하 “기금특별회계”라 한다.)를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수산 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 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
|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|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|
| <p>1. “농·어업”이라함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조제 호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.</p> <p>2. “농·어업인”이라함은 충청북도 내에 정착하여 농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| <p>1. “농어업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“농어업인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가. ~ 바. (생략)</p> <p>3. “생산자단체”라 함은 법 제 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.</p> <p>4. “법인체”라 함은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.</p> <p>5. “지역명품”이라 함은 다음의 품목을 말한다.</p> | <p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----- <u>란</u> ----- -----.</p> <p>5. ----- <u>이란</u> ----- -----.</p> |
|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6. “차세대농업인”이라 함은 농업계고등학교, 농업계 2년제 대학, 대학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32세 이하인 자로서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</p> |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7. “귀농인”이라 함은 만 5세 이하의 자가 타 시도(시 군 포함)에서 1년 이상 농업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| <p>7. ----- 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8. “농수산물”이라 함은 법 제 30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</p> | <p>8. ----- 이란 ----- -----.</p> |
| <p>제3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 기금특별회계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영심의위원회(이하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</p> <p>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 | <p>제3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(이하 “기금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</p> |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15조(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)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, 시·군 및 자치구에 시·군·구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,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, 그 밖에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17조에 따른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
3.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